

의안번호	2205617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5.01.09.
추계번호	24C515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사업)	○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8. 진료권 내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기획·조정·사업 수행 9. 진료권 내 시·도,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사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사업(안 제7조)

-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진료권 내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사업’ 및 ‘진료권 내 지역 및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616호)은 “진료권”을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하여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으로 정의하고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강화를 명시함

- 다만,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에 대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지방의료원의 사업 확대 여부 및 그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이 어려움
 -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¹⁾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여 지역 내 여러 정부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나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 및 다양한 의료자원 간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역할로 지역 개소당 4.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고 있음²⁾
 - 개정안에 따라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비 또는 지방비 증가가 수반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 해당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정부가 2021년부터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2)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13.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